경기도 공고 제2023-5482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변경 공고

경기도 공고 제2023-5206호(2023.2.17.)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의 변경 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변경내용		근거법령 및 변경 사유
			당 초	변 경	
선일건설(주) (박영일)	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43 석산빌딩 302-3호 (하안동)	건축공사업 (10-4206)	영업정지 ('23.3.1.~'23. 6.30.)	영업정지 ('23.3.1.~'23. 6.15.)	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(대표자의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감경)